



제429회국회(임시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료취약지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 등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09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의료취약지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 등	2

I. 개요

1.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0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9.

(3) 회 부 일 : 2025. 9.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의료취약지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제4항제3호 신설),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안 제13조의2 신설), 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 ----- -----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 ----- ----- ----- -----.

현행	개정안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u><신 설></u> ⑤ (생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⑤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 중 60세 이상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니어의사를 활용하기 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시니어의사를 연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 중인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¹⁾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시니어의사 사업이 그 대상기관을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개정안은 시니어의사 제도의 목적을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안 제13조의2제1항)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현행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대상기관(2025년 기준)²⁾]

- 대상기관: 총 149개소

①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53개소)

* 서울 소재 기관 및 상급 종합병원 제외

1) • 주요내용: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의사에 대한 채용지원금 지급, 시니어의사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사업 지원
• 2026년 예산안: 72억 2,500만원
• 예산과목: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세부사업(일반회계 2750-303) 내 ‘시니어의사 지원’ 내 역사업

2) 보건복지부, 2025년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집행 지침, 2025. 9.

② 의료취약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96개소)

* 의료취약지: 「2024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의 2차 의료기관 취약지수 또는 의료취약도 50점 이상 시군구

□ 둘째, 개정안은 시니어의사 기준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안 제13조의2제1항),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및 지역별 특성 등에 따라 기준연령의 증감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연령을 포함한 상세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안 제12조제2항),

이는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의무적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시니어의사 활용지원 조항(제12조 제4항)과 관련해서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외에도 유사한 인력지원사업(지역거점공공병원

3) 한편 현행법 제12조가 의료취약지의 지정은 고시로 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동법 조항에 위배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만 고시를 제정하였고 나머지 취약지(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및 혈액투석 의료취약지)는 해당 조항이 신설·시행된 2013년 이래 12년이 경과하도록 고시를 전혀 제정하지 않고 사업 안내서(지침)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는 누락된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조속히 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으므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보건복지부는 누락된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및 혈액투석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조속히 고시를 제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특정한 하위법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음에도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정한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이와 동일함(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과전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니어의사 근거 조항(제13조의2 신설)의 경우 시니어의사 사업이 지역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원 및 업무 위탁 주체에 시·도지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현재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및 매칭 플랫폼(닥터링크)을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위탁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는 행정 효율과 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현행 임의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임.

□ **(대한의사협회)**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 건강권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 **(대한간호협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완화하고 은퇴한 의료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에 동의함. 그러나 현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의사를 모집하고 있음에도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니어의사를 해당 공무원의 처방내용에 대한 자문의사로 연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9